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
검자 준비자료(사용전검사시 제출 할 수 있다)

별표5, 별표9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생략)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터빈·압력용기·액화가스저장조·액화가스용기화기·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검자 준비자료(사용전검사시 제출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제28조제1항 관련)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제28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설치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나. 변경공사		
1) ~2) (생략)	(생략)	(생략)	1) ~2)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생략)	(생략)	(생략)	(15)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풍력설비	풍차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풍차 설치 또는 대체	(6) 풍력설비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 설치 또는 대체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모듈 대체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모듈의 2분의1 이상 (정기검사 기간 이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량이 2분의1 이상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모듈의 2분의1 이상 (정기검사 기간 이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량이 2분의1 이상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신 설)			(다) 부대설비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1 이상 (정기검사 기간 이내 구조물을 교체하여 누적량이 2분의1 이상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체
(2) 연료전지설비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연료전지의 설치 또는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연료전지의 설치 또는	(2) 연료전지		

(나)~(다)(생략)	는 <u>전체</u> 대체 (생략)	는 <u>전체</u> 대체 (생략)	설비 (가) 연료 전지		
(3)전기저장장치 (가)이차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이차전지 설치 또는 <u>전체</u>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 이차전지 설치 또는 <u>전체</u>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연료전지의 설치 또는 <u>스택</u>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연료전지의 설치 또는 <u>스택</u> 대체
(나)~(다)(생략)			(나)~(다)(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3)전기저장장치			(3)전기저장장치		
(가)이차전지			(가)이차전지		
2. 변전소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 이차전지 설치 또는 <u>전체</u> 모듈의 2분의1 이상 (정기검사 기간 이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량이 2분의1 이상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h 미만의 이차전지 설치 또는 <u>전체</u> 모듈의 2분의1 이상 (정기검사 기간 이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량이 2분의1 이상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체
나. 변경공사					
1)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2)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신 설)	(나) (생략) (다) (생략)		
2. 변전소			2. 변전소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가. 설치공사			가. 설치공사		
나. 변경공사			나. 변경공사		
1)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1)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2) 차단기			2)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용의 경우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3. 송전선로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 (신 설)	3. 송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지중(地中) 송전선로 설치 (신 설)	가. 설치공사		

나. 변경공사 1)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신 설)	나. 변경공사 1) 전선로 2) 개폐소	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개폐소 설치 또는 개조	<u>용의 경우 20만볼트 미만의 송전선로의 설치)</u>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지중(地中) 송전선로 설치(<u>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의 경우 20만볼트 미만의 지중송전선로의 설치)</u>
4. 배전선로(공동구 또는 전력구만 해당한다) 가. 설치공사(<u>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u>) 나. 변경공사(<u>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u>) (신 설)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설치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u>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의 경우 20만볼트 미만의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u>)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개폐소 설치 또는 개조
			4. 배전선로(공동구 또는 전력구만 해당한다) 가. 설치공사(<u>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u>) 나. 변경공사(<u>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u>)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설치(<u>공동구 또는 전력구만 해당한다</u>)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u>공동구 또는 전력구만 해당한다</u>)

	<u>다. 전기저장장치</u> <u>(1) 이차전지</u> 용량 1만킬로와트 h 이상의 이차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u>(2) 전력변환장치</u>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 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u>(3) 부대설비</u>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u>비고</u> 1. 전기저장장치는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 <u>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u>(제31조제4항 관련) 1. (생략) 2. ~ 5. (생략)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신설>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u>연료연소설비</u> 등에 관한 공사 8.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전력구 안에 시설된 배전설비만 해당함)에 관한 공사 가.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 계획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신설>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 13. (생략)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 <u>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u>(제31조제4항 관련) 1. (생략) 2. ~ 5. (생략)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u>공장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u>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에 한한다.) 나.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u>연료연소설비, 풍력 타워</u> 등에 관한 공사 8.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전력구 안에 시설된 배전설비만 해당함)에 관한 공사 가.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 계획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u>물밀전선로 포설이 완료된 때</u>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 13. (생략)

현행

[별지 제28호서식]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4. 1.>

사용전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자	대표자 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① 전화번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 기 설 비 개 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검 사 회 망 연 월 일	년 월 일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 류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1부.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 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신 설>	수수료 「전기안전관 리법」 제42 조에 따라 산 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 는 금액
----------	--	---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안

[별지 제28호서식]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4. 1.>

사용전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자	대표자 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① 전화번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 기 설 비 개 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검 사 회 망 연 월 일	년 월 일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 류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1부.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 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 시하는 수검자 준비자료(사용전검사이시 제출할 수 있다)	수수료 「전기안전관 리법」 제42 조에 따라 산 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 는 금액
----------	---	---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